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2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 한병도·김승원·김민철

이형석 · 오영환 · 이상헌

권칠승 · 김민석 · 정일영

허 영・박재호・박상혁

신영대 · 최종유 · 이해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행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음.

이에 보행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행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등).

법률 제 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 표
-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3. 보행교통 수송분담률 증진에 관한 사항
- 4.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5.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조의2(종전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의2(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본다.
 -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 · 보수 및 성능 개선
-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 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보행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 제1항) 전단 중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으로, ""실행계획""을 ""지역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실행계획"을 각각 "지역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종전 제2항) 중 "실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국가 실행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실행계획"으로 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 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3(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에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1.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 의하는 사항
 -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 등의 산정 및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지수를 개발·조사·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보행안전지수 등은 매년 조사·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 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 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 연구
 - 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 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관련 공공사업의 계획·시행 및 평가 지원
 -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연구
 -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
	<u>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u>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
	여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u>한다.</u>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u>및 목표</u>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보행교통 수송분담률 증진에
	<u>관한 사항</u>
	4.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5.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 제7조의2(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 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 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 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 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 1항에 따른 중앙 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 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 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 통 개선계획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 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교통 • 보행 관련 계획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 <u>향</u> 및 목표
-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 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 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 통 개선계획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 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교통 • 보행 관련 계획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 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 성
-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 양 및 홍보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 역의 보행환경 정비
 -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 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 호구역
-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 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 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

-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 성
 -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 양 및 홍보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 역의 보행환경 정비
 -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 <u>인 보호구역 및</u> 장애인 보 호구역
 -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 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 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 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 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 거나 관리하는 도로 · 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 야 하다.

⑤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 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 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 지사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 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 야 한다.

> 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 거나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 야 하다.

> 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 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 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 지사를 거쳐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 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_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_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 동편의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 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접・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 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 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 동편의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보행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 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 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신 설>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 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 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보행・교통 관련 계획(매 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 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이

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 계획(이하 "국가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u>②</u> <u>지역계획</u> -
" <u>지역 실행계획</u> "
<u>지역 실행계획</u>
<u>지역 실행계획</u>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③ 국가 실행계획 및 지역 실 <u>행계획</u>-----

-----.

제8조의2(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 ①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행정안전부에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 한 사항
- 2. 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

 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 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제8조의3(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에 지역 보 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

 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

 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 등의 산 정 및 공표) ①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지수를 개발·조사·산정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 다.

<신 설>

- ② 보행안전지수 등은 매년 조사·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3(보행환경 정책연구센 터의 지정) ①행정안전부장관 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 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 환경 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정 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 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

 립 지원

- 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관련 공공사업의 계획・시행 및평가 지원
-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연구
-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 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정 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